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[별지 제13호서식]

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

단지 현황	단지 명칭	
	주소	
	사용검사일(=사용승인일) 년 월 일	
사업주체	성명(법인명 또는 상호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(관리단)	입주자대표회의(또는 관리단) 명칭 (전유부분인 경우 입주자 성명을 적습니다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종료확인 사항	연차별	
	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년간)	
	특이사항	

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·완료하였기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< 위 당사자 >

- 사업주체: (인)
- 입주자: (인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(인)

첨부서류	1. 전유부분: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2. 공용부분 가.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: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나.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: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서(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) 3. 그 밖에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참고사항	-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. -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.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